

의안번호	제 393 호
의 결 년 월 일	2001년 월 일 (제 회)

###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.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년월일	2001. . .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#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·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9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□ 제안이유

- 종전에는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 관련업무를 도지사가 조례로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업무집행권자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정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중 신고체육시설업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
- 과태료 부과기준중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
-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점에 대하여 상위법률과 일치시키고자 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과태료 부과대상중 신고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 (제2조제7항 및 제8항)
- 과태료 감경 또는 가중 규정 삭제 (제3호제1항 단서 및 후단)
- 과태료 부과기준중 신고체육시설업 관련 규정 삭제 (제3조제1항 별표)
- 과태료 납부처를 도금고로 조정 (제3조제2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)
-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점 조정 (제4조제1항)
  -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→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

□ 의안전문 : 별첨

□ 관계법령 발췌 : 별첨

□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: 해당없음

□ 기타 참고자료 : 없음

## □ 제안자 의견

상위법인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##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·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·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중 “자격”을 “자격이”로 하고, 동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,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단서 및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”를 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란중 “당시(군)금고”를 “도금고”로,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증란중 “시·군금고”를 각각 “도금고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## 과태료 처분 기준

(단위 : 천원)

위 반 행 위	근 거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1.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	법 제21조제1항	500	750	1,000
2.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경우	법 제26조	500	750	1,000
3.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9조	500	750	1,000

# 신구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부과대상) (생략)</p> <p><b>1. (삭제 99.7.30)</b></p> <p>2.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.</p> <p>3.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<u>자격</u> 없는 자를 배치한 자.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삭제 99. 7.30)</p> <p>6. (삭제 99. 7.30)</p> <p>7.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.</p> <p>8.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<u>폐쇄명령</u>을 받고 법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.</p> <p>9. (삭제 99. 7.30)</p>	<p>제2조(부과대상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....</p> <p>2. .... <u>자격이</u> .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. <u>다만,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.....</p> <p>..... (삭제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이의신청)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<u>처분결과</u>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. (개정 99. 7.30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이의신청) ①.....</p> <p>..... <u>처분이</u> <u>있음을 안 날부터</u> 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○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(체육시설업의 구분·종류)

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등록체육시설업 : 골프장업, 스키장업, 요트장업, 조정장업, 카누장업  
빙상장업, 자동차경주장업, 승마장업, 종합체육시설업  
... (9종)

2. 신고체육시설업 : 수영장업, 체육도장업, 볼링장업, 테니스장업  
골프연습장업, 체력단련장업, 에어로빅장업, 당구장업  
눈썰매장업, 무도학원업, 무도장업 ... (11종)

② (생략)

### ○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(체육시설업의 등록)

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.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99.1.18>

② (생략)

### ○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(체육시설업의 신고)

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99.1.18>

### ○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44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<개정 99.1.18>

1. 삭제 <99.1.18>

2.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자.

- 2의2.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.
- 3.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.
- 4.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.
- 5. 및 6. 삭제 <99.1.18>
- 7.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.
- 8.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4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.
- 9. 삭제 <99.1.18>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. <개정 99.1.18>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<개정 99. 1.18>

○ **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)**

- ①, ② (생략)
- ③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4와 같다. 다만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<2000. 1. 18>
- ④ (생략)